

## 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1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장인수 의원 대표발의]

#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주민청구조례심사를 위한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예외 규정 적용을 확대 정비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- 나.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제2항).
- 다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예외 규정 적용을 확대함(안 제2조제3항).
- 라.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한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예외 규정을 신설함(안 제2조제5항).
- 마.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함(안 제2조의2).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2년 1월 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447-701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## 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#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인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8-633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12월 30일

발의의원 : 장인수, 김영희, 김명철, 이상복,  
성길용, 이성혁, 한은경 의원

## 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주민청구조례심사를 위한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예외 규정 적용을 확대 정비하기 위함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- 나.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제2항).
- 다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예외 규정 적용을 확대함(안 제2조제3항).
- 라.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한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예외 규정을 신설함(안 제2조제5항).
- 마.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함(안 제2조의2).

## 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##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6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윤리심사 및 징계자격”을 “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”로, “윤리 특별위원회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”를 “특별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임기만료까지 존속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과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.

- ② 제3조와 제4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회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1명을 지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62조</u>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가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의회는 의원의 <u>윤리심사 및 징계자격</u>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<u>윤리 특별위원회</u>를 둔다.</p> <p>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다만, <u>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</u>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71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</u>----- ----- <u>윤리특별위원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임기만료까지 존속한다.</u></p>

<신 설>

제2조의2(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

회) ① 의회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과 「오산시의회의 규칙」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3조와 제4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회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1명을 지정한다.

## 관계법령발췌서

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2.1.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, 전부개정]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22.1.13.] [법률 제18495호, 2021.10.19., 제정]

제13조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)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(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